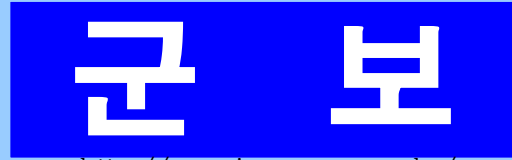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343호 2014. 12. 24.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4 - 113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기간)
변경 승인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4 - 116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939호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4 - 113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기간) 변경 승인 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정선군고시 제2005-25(2005.06.10)호 및 정선군고시 제2008-126(2008.12.23)호, 제2010-1(2010.1.8.)호, 제2010-180(2010.12.31.)호, 제2012-25 (2012.4.6.)호, 제2013-40(2013.05.03.)호, 제2013-118(2013.12.27.)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제3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사 업 명	위 치	면적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번지	58,784

2.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기 승 인		금 회 승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76	(주)대명건설 대표이사 권혁철	변경없음	변경없음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기 승 인	금회승인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2004년 ~ 2014년	2004년 ~ 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관계도서 : 게재생략(관계도서는 정선군 지역경제과(033-560-243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변경없음(게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고시 제2014 - 116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정선군고시 제2006-12호(2006.04.14.), 제2009-106호(2009.08.07.), 제2013-18호 (2013. 03.01.), 제2013-119호(2013.12.27.)로 고시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고한스카이빌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 변경(시행기간)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시행자)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시행자 지정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사 업 명	위 치	면적
고한스카이빌아파트건립사업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3번지 일원	19,512㎡

2.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기 정			변 경		
사업명	주 소	성 명	사업명	주 소	성 명
고한스카이빌 아파트건립사업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원평길 259	덕성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장병길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3.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기 정		변 경	
사업개요	시행기간	사업개요	시행기간
○ 아파트(250세대) 및 부대시설 건립 ○ 사업비 : 28,210백만원	2005년 ~ 2014년	변경없음	2005년 ~ 2015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939호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물류센터의 기능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나.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안 제5·6·7·8조)
- 다. 위탁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범위(자격)를 규정함 (안 제9조)
- 라. 위탁신청 및 선정절차를 규정함 (안 제10조)
- 마.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둠 (안 제10조제5항)
- 바. 물류센터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 사.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지원사항 규정 (안 제18조)

3.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 233-701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및 FAX : 033-560-2594 / 033-560-2428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지역경제과(전화 : 033-560-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인 및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이 건립하는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물류센터”라 한다)란 공산품과 지역 농산물·임산물·축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물류센터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란 물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물류센터는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신동읍 의림로 141-70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물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에 상품의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2.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 도·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4.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공급
5.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6. 그 밖에 물류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취급품목 생산자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통구조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공산품과 농산물 조달·공급체계에 관한 사항
- 2. 운영주체 선정, 관리운영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3. 물류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결정
-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

제7조(회의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9조(위탁) 물류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자본금을 전액 또는 현물로 출자한 지방공기업
-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유통자회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지역농·축·산립조합
- 4. 지역농협,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단체나 법인, 지역 전통시장조합, 물류도매상 등이 공동으로 참여·출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탁신청 및 선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물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 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물류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 ④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⑤ 물류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물류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물류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위탁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공산품과 농·임·축산물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

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취급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물류센터의 토지, 건물 및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함께 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연 2회 이상 물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물류센터의 사용료는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물류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그 밖에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제17조(지도감독)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물류센터 관리자로 둔다.

제18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유통산업 발전법」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물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 설립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선정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취 급 품 목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5년간의 사업계획서
7.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물 류 센 터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간) 년 월 일 까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